

제 1144 호
1985. 7. 2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시장 영 모 현
 편집인 : 공 보 관 이 광 우
 전 화 : 731-6111-3
 인 쇄 : 서울특별시 종합활판실
 전 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규 칙

제 2109 호 : 서울특별시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중 개정규칙 3

제 2110 호 :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개정규칙... 4

제 2111 호 : 서울특별시수도구아파트운영관리규칙중 개정규칙 9

제 2112 호 :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11

◎ 고 시

제 498 호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시행허가변경 11

< 이 면 제 속 >

공 합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390

제 499 호 : 도시계 사업 (학교) 시행변경허가 (준공기한연기)	15
제 500 호 : 공평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	16

◎ 공 고

제 426 호 : KS 표시 정지처분공고	20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규 칙

서울특별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26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109 호

서울특별시위험물제조소등에대한행정 처분규칙중개정규칙(안)

서울특별시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, 별표 2, 별지제 2 호 서식, 별지제 3 호 서식, 별지제 4 호 서식을 다음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위험물 제조소등 행정처분기준

항	위 반 사 항	처 분 내 용	비 고
1	소방법 제 22 조 제 1 항에 의한 검사결과 제조소등의 위치, 구조, 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	1) 1차 : 행정명령 ○ 개수공사가 간단한 시설 (15일간) ○ 위 이외시설 (30일간) 단 2 항 위반사항 (15일간)	
2	소방법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때	2) 1차 명령불응시 사용정지 (시정완료시까지)	
3	허가조건에 위반한 때		
4	기타 소방관계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 때		
5	제조소등의 위치, 구조, 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때		
6	소방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할때	1) 1차 : 행정명령 2) 1차 명령불응시 허가취소	
7	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위반사	사용정지 (시정완료시까지)	

항	위 반 사 항	처 분 내 용	비 고
	항중 1개항 이상 해당하는 장소로서 화재위험이 현저한때		
8 9 10	8 사용정지 명령에 불응한때 9 사용정지 처분일로부터 6월이 내에 시정 완료하지 아니한때 10 허가조건을 위반한때 (유사위발 유 제조, 저장, 취급한때)	허가취소	
11	11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인명 또는 재산피해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1. 사망자가 3명 이상인때 2. 사망 및 부상자가 7명 이상인때 3. 재산피해 5,000만원 이상 인때	사용정지 또는 허가취소	
<p>서울특별시 수도사업 특별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>1985. 7. 26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</p> <p>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110 호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중 개정규칙</p> <p>제6조제2항중 "경리과장"을 "업무과장"으로 한다.</p>		<p>제6조제3항중 "경리과장"을 "업무과장"으로 한다.</p> <p>부 칙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 수도국 아파트운영 관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</p> <p>1985. 7. 26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</p>	

(별표 2)

사 용 (영 업) 정 지 표 지

위 치 :

건물명 :

허가 (권허) 사항 :

위 시설은 소방법 제 조를 위반하여 소방법 제 조에 의하여 사
용 (영업)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.

누구든지 본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
니됩니다.

년 월 일

○ ○ 소 방 서 장 인

(별지제 2호서식)

○ ○ 소 방 서

분류기호 :

19

수 신 :

제 목 : 시정보완명령서

소방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(보완) 명
령하니 기간내에 (완비)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
때에는 소방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다 음

구 분	명 령 내 용	기 간	관 계 규 정

끝

○ ○ 소 방 서 장 인

(별지제 3호서식)

○ ○ 소 방 서

분류기호 : 19

수 신 :

제 목 : 사용(영업)정지

귀 는 소방법 제 조 제 항에 위반되어 소방법 제 조
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지를 명합니다.

다 음

- 1. 허가사항
- 2. 위반내용
- 3. 사용(영업)정지기간

○ ○ 소 방 서 장 인

(별지 제 4 호 서식)

○ ○ 소 방 서

분류기호 :

수 신 :

제 목 : 허가(면허)취소

귀 는 소방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소방법 제 조에 의하여 허가(면허)취소하니 수명즉시 허가증(면허증)을 반납하고 시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- 1. 허가(면허)사항
- 2. 취소년월일
- 3. 허가증(면허증)반납장소

○ ○ 소 방 서 장 인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111 호

서울특별시수도국아파트운영관리
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수도국아파트 운영관리
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규칙
명칭을 "서울특별시상하수도국관사운영
관리규칙"이라 한다.

제 1 조중 "수도국아파트 (이하 "아파
트"라한다)"를 "상하수도 상수도
분야 사업소관사(이하 "관사"라 한
다)"로 한다.

제 1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제 1 조의 2 (관사의 정의) 이 규
칙에서 관사라 함은 아파트, 연립주
택, 단독주택등 주택의 형태를 불문
하고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
건물을 말한다.

제 2 조중 "(입주자 신청)"을
"(입주자선정)"으로, "관할수원지"
를 "당해사업소"로, "해당한차"를
"해당하는자"로, "아파트"를 삭제
하고 단서를 다음과 신설한다.

"단 사업소 유지관리상 필요한자
는 유주택자라도 입주자로 선정할수
있다."

제 2 조 1 호중 "수원지"를 "사업
소"로 2 호중 긴급복구 다음에

"또는 유지관리"를 삽입 5 호는
삭제하고 6 호중 "수원지 유지관리"
를 "사업소"로 "수도국"을 "상
하수도 상수도분야"로 한다.

제 4 조중 다음의 "의"를 삭제하
고 1 호중 "기설아파트"를 "관사
의 기존"으로 "개축"을 "증, 개
축"으로 "변조"를 "변형"으로,
"임금"을 "금지"로

3 호중 돌발사고 앞에 "사업소내"
를 삽입, 발생시의에 "에"를 삭제

4 호중 "공납금"을 "공과금"으
로 "납기내"를 "기간내"로

5 호중 인근 다음에 "및 관사내
타"를 삽입

7 호중 "아파트"를 "관사"로
"환경정화"를 "환경정비"로 하고

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 퇴거명령 수명시 지정기간내 퇴
거

제 5 조중 "(입주자 자격상실)"
을 "(입주자 퇴거명령)"으로 제

①항중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에 "는"
을 삽입, "명할 수 있다"를 "명
하여야 한다"로 2 호중 "다른 국
과소"를 "타기관 및 타 국, 과"르

하고 제 ②항중 퇴거의 "의"를 삭
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 "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
에는 1월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
다."

<p>제 6 조 제 ①항을 제 ②항으로 제 ②항을 제 ③항으로 하고 제 ①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소장은 판사의 관리책임자로서 판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항중 "관리책임자로"를 "입주자 반장으로" 하고</p> <p>③항중 "관리책임자는"을 "건항의 입주자 반장은"으로 한다.</p> <p>2호중 "입주자의" "의"를 삭제</p> <p>3호중 "아파트운영"을 "입주자 관리"로 한다.</p> <p>제 7 조를 제 8 조로 하고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 7 조 (지도감독) 사업소 관할 주관 파장 (수원지는 수원기전파장, 배수지는 급수파장)은 관할사업소판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.</p> <p>제 8 조중 "매 익월 5일"을 "매분기 익월 10일"로, 시장 다음에 "(주관파장)"을 삽입한다.</p>	<p>부 칙</p> <p>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별 표</p> <p>서약서중 "수도국 아파트"를 "상하수도국판사"로 "기간중"을 "하중동안"으로 다음의 "의"를 삭제, "준수"를 "이행"으로 "여하한"을 "어떠한"으로 한다.</p> <p>준수 사항</p> <p>1호중 "아파트"를 "관사"로 "엄금"을 "금지"로</p> <p>3호중 "수원지 내의"를 "사업소내"로 "에"를 "발생시"로</p> <p>4호중 "공납금"을 "공과금"으로 "납기내"를 "기간내"로</p> <p>5호중 인근 다음에 "및 판사내타"를 삽입</p> <p>7호중 "아파트"를 "관사"로 "환경정화"를 "환경정비"로 하고</p> <p>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
--	--

9 퇴거명령 수명시 지정기간 내
퇴거
"직, 성명"을 "직명"과 "성
명"으로 성명 다음에 (인)을 삽
입한다.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시행규칙
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85. 7. 26
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2112 호

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시행규칙
중 개정 규칙(안)

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 시행규칙
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 2 조 (안전거리) 2항중 "조례
제 16 조 제 1 호 규정에 의한"을 "조
례 제 16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에 의
한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
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98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) 시행허가변경

1. 건설부 고시 제 46 호 (85.2.5)
로 시설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
고시 제 149 호 (85.3.7)로 지적
변경 승인된 과천 하수종말처리
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시 계획
법 24 조 및 동법 시행령 6 조
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하고 동
법 제 24 조 제 3 항 및 동법 시
행령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
의거 고시한다.

2. 변경사항 조서는 상하수국 하수
과 및 경기도 과천시구 출장소
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
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7. 26

서울특별시장

<p>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기도시흥군 과천면 하리일대</p> <p>나. 사업종류 및 명칭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하수) 명칭 : 과천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</p> <p>다. 면적 당초 : 50,795㎡ 변경 : 51,398㎡</p> <p>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, 주소 : 대한주 택공사장 박 영 수</p> <p>마. 사업의 착수 준공년월일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당 초</td> <td>변 경</td> </tr> <tr> <td>착수 : '83.10</td> <td>'83.10</td> </tr> <tr> <td>준공 : '85.12</td> <td>'86.5</td> </tr> </table>	당 초	변 경	착수 : '83.10	'83.10	준공 : '85.12	'86.5	<p>바. 면적정정에 대한 수용 또는 사 용할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및 소유이외의 권리명세서 (별첨)</p> <p>사. 변경시행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 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(별첨)</p> <p>첨부 : 변경 시행하여 수용,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 이 외의 권리명세서</p>
당 초	변 경						
착수 : '83.10	'83.10						
준공 : '85.12	'86.5						

토 지 조 서

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현입면 적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시흥군 과천면 하 리	245-16	천	72	72	서울시서대문구북이현동 163-32	성 용 진	
	247-3	천	122	122	서울시용산구이촌동 300-10	한 영 호	
	248-1	"	209	209	동 소 300-10	"	
	248-2	"	1,603	1,603	서울시강남구서초동 647	김 순 일	
					서울시용산구인강로 3 가 65-352	김 순 기	
					시흥군과천면하리 147	김 순 철	
					시흥군과천면하리 147	김 순 진	
					시흥군과천면하리 147	김 순 말	
	248-13	"	876	876	서울시강남구논현동 217-9	여 종 빈	
	248-13	"	123	123	국	전 설 부	
249	"	1,322	1,322	시흥군과천면하리 249	이 삼 순		
249-1	"	1,441	1,441	국	국 세 청		
249-2	"	4,476	4,476	서울시 동작구사당동 1033-17	길 광 섭		
				601호 서울강남구방배동 75R-4 삼호 AP 5동	최 영 숙	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가등기	

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선(면) 적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 의외 관리명세
					관	제인주소성명	
시흥군 과천면 하리	250-3	전	2,120	2,120	서울시성동구성수동 1가 46-1	합	근저당권
	251	"	1,831	1,831	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 40-51	김병억	
	252	"	2,003	2,003	시흥군과천면하리 544-3	권태중	
	253	"	3,425	3,425	시흥군과천면하리 401	협천이씨 우치자현 대부공과 종중	
	254-1	"	2,936	2,936	시흥군과천면하리 513	이정영	
	254-2	"	1,124	1,124	서울시용산구원효로 1가 43	박인숙	
	255	답	1,155	2,155	시흥군과천면관문리 87	이성주	
	256	전	192	192	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 2가 7	김택열	
	257	묘	1,240	1,240	서울시용산구용문동 35	김원근	
	258-11	전	4,354	4,354	시흥군과천면하리 258-1	김경국	
	264-6	임	1	1	시흥군과천면하리 363	신용식	
	264-5	전	570	570	시흥군과천면하리 264-2	조병오	
					시흥군과천면하리 264-2	이연호	
					" " 264-2	김주도	
	265-1	"	26	26	" " 548	최태석	
	337-5	답	32	32	" " 534	남상중	
					" 관문리 253-7	과천단위 농업협동 조합	
	337-6	"	239	239	" 하리 541-3	윤망영	
					" " 541-3	윤경화	
					" " 541-3	육정림	
343-1	전	908	908	" " 532	김순기		
-2	"	347	347	상 동	상 동		
344-4	답	499	499	시흥군과천면하리 532	김순기		
344-5	답	79	79	서울시강남구우면동 279	이동훈		
555-48	전	6,275	6,276	국	건설부		
555-139	"	1,220	1,220	"	"		
555-50	"	197	197	"	채무부		

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현입면 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시흥군	555-51	천	219	219	서울시강남구우면동 279	재 무 부	
과천면	566-1	도	754	754	" "	"	
하 리	566-2	도	58	58	" "	"	
	568-1	구	10	10	" "	"	
관문리	40-74	대	149	149	시흥군과천면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3-302	신 장 우	
	40-72	전	450	450	시흥군과천면막제리 57 서울성북구성북동 1가 115	박 순 만 이 석 준	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가등기
	40-73	"	62	62	시흥군과천면 막제리 57 서울성북구성북동 1가 115	박 순 만 이 석 준	
	40-75	"	72	72	시흥군과천면중앙동 37 주공아파트 113-302	신 장 우	
	42-1	"	1,281	1,281	전북군산시문율동 147	고 예 순	
	43-1	"	955	955	시흥군과천면막제리 57 서울성북구성북동 1가 115	박 순 만 이 석 준	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가등기
	44-9	답	530	530	시흥군과천면하리 543	김 철	
	44-10	전	718	718	시흥군과천면막제리 57	박 순 만	소유권이전 등기청구 권가등기
	44-11	"	207	207	서울성북구성북동 1가 115 시흥군과천면막제리 57	이 석 준 박 순 만	
	46-11	"	115	115	국	재 무 부	
	46-12	"	125	125	서울시성북구동선동 5가 172-13	김 민 정	
	46-9	"	47	47	" " " "	김 두 진	
					" " " "	김 경 진	
					" " " "	김 대 환	

소재지	자 번	지목	공부상 면적(㎡)	권입면 적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시흥군 파천면 관문리	48-4	답	59	59	시흥군파천면 관문리 124 국	김순재 법무부	가압
	48-8	"	34	34	시흥군파천면 관문리 124 국	김순재 법무부	가압
	274-29	천	1,770	1,770	"	건설부	
	-30	"	86	86	"	"	
	-32	"	648	648	"	"	
	-33	"	208	208	"	"	
	-35	"	511	511	"	"	
	-37	"	1	1	"	"	
	-28	"	116	116	"	재무부	
	274-8	"	60	60	"	건설부	
274-11	"	135	135	"	재무부		
계	58 필지		51,398㎡ (15,563.4 평)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99 호

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
(준공기한연기)

1. 서고시 제 513 호(84.8.27)로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허가 변경된 동대문구 면목동 49-3 외 5 필지에 대하여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연기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(학교)시행변경허가(준공기한연기)하였기

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서류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7.26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: 동대문구면목동 49-3 외 6 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학교)

서일전문대학 시설확충공사

<p>다. 사업의 면적 및 규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지 : 12,699.7 · 건물 : 건축면적 : 1,926.17 연 면 적 : 8,020.86 <p>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소 : 동대문구면목동 49-3 · 성명 : 세방학원대표이사 이용곤 <p>마. 사업의 확공 및 준공예정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착 공 일 : 81.10.31 · 준공예정일 : 당초 : 84.12.31 변경 : 86.12.31 <p>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생략 (변경사항 없음)</p> <p>사.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생 략 (변경사항 없음)</p> <p>아. 설계도서 : 생략 (변경사항 없음)</p>	<p>◎ 서울특별시고시제 500 호</p> <p>공평구역제 3 지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고시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 호 (80. 6.12) 로 사업시행 인가된 공평 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 여 도시재개발법 제 8 조,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 행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1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7.26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장</p> <p>가. 변경인가내용</p>
---	--

구 분	기 정	변 경
재개발사업의 명칭	공평구역 제 3 지구재개발사업	변경없음
시행구역	종로구 공평동 25 번지 일대	"
시행면적	5,382.2 ㎡	5,498.1 ㎡
대지면적	4,225 ㎡	변경없음
시행자	종로구 공평동 25 번지 천호기업 이 성 용	"
시행기간	80.6.12 - 85.9.30	80.6.12 - 86.3.31
사업시행변경계획서	별 칩 (생략)	변경없음
규 약	"	"
시행실제조서	"	"

나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별 첨) 다. 변경사유	○ 공공시설용지 추가확보에 따른 시행연차 변경 ○ 공공시설용지 추가확보를 위한 시행기간 연장
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	

순번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사행면적 (㎡)	소유자 주소성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	제인주소성명	
1	중로구공평동 1	대지	574.5	574.5	중로구공평동 1	천호기업	근저당권
					· 한미은행본점 · 신용보증기금 중부지점		
					· 대한생명보험		
2	2	"	360.3	360.3	"	"	"
3	3	"	69.8	69.8	"	"	"
4	25	"	1,347.9	1,347.9	"	"	"
5	25-1	"	162.1	162.1	"	"	"
6	25-2	"	14.2	14.2	"	"	"
7	25-4	"	141.3	141.3	"	"	"
8	25-5	"	59.1	59.1	"	"	"
9	28-2	"	39.7	39.7	"	"	"
10	30	"	50.8	50.8	"	"	"
11	30-1	"	18.6	18.6	"	"	"
12	31-2	"	2	2	"	"	"
13	32	"	66.9	66.9	"	"	"

순번	지 번	지 목	지 적 (㎡)	시행면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14	종로구공평동 32-1	대지	55	55	종로구공평동 1 · 한미은행본점 · 산용보증기금중부지점 · 대한생명보험	천호기업	근저당권
15	" 41	"	22.6	22.6	"	"	"
16	" 41-1	"	79	79	"	"	"
17	" 41-2	"	97.9	97.9	"	"	"
18	종로구인사동 194-9	종교 용지	217.5	217.5	"	"	"
19	종로구공평동 1-1	대지	14.4	14.4	종로구공평동 1 한미은행본점	천호기업	"
20	" 1-2	"	16.1	16.1	"	"	"
21	" 3-2	"	35.8	35.8	"	"	"
22	" 32-2	"	3.7	3.7	"	"	"
23	" 29	"	86	86	종로구공평동 1 대한생명보험	천호기업	"
24	" 31-1	"	258.9	258.9	"	"	"
25	" 31-3	"	3.6	3.6	"	"	"
26	" 33	"	29.6	29.6	"	"	"
27	" 33-1	"	21.1	21.1	"	"	"
28	" 25-3	"	99.8	99.8		서울특별시	해당없음
29	" 25-6	"	38.3	38.3	종로구공평동 1	천호기업	
30	" 27-1	"	20.2	20.2	"	"	
31	" 34	"	4	4	"	"	
32	" 34-1	"	60.3	60.3	"	"	
33	" 34-2	"	5	5	"	"	
34	" 38	"	0.9	0.9	"	"	
35	" 39-3	"	73	73	"	"	

순번	지 번	지목	지 적 (㎡)	시행면적 (㎡)	소유자 주소 성명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					관 계 인 주소 성명		
36	종로구공평동49-1	도로	96.9	66.9		서울특별시	
37	49-3	대지	48.7	48.7	종로구공평동1	천호기업	
38	49-7	"	0.6	0.6	"	"	
39	100-3	도로	2.8	2.8		서울특별시	
40	194-17	대지	157.4	157.4	"	천호기업	
41	194-19	도로	23.7	23.7	종로구신문로1가198	신 태 중	
42	194-20	대지	10.6	10.6	종로구공평동1	천호기업	
43	194-22	"	38.7	38.7	"	"	
44	194-23	"	95	95	"	"	
45	194-29	도로	2.7	2.7	종로구신문로1가198	신 태 중	
46	194-30	대지	8.1	8.1	종로구공평동1	천호기업	
47	195	"	44.9	44.9	"	"	
48	195-1	"	5	5	"	"	
49	195-2	"	14.6	14.6	"	"	
50	196	"	44.7	44.7	"	"	
51	196-1	"	1.3	1.3	종로구인사동196	염 회 영	
52	196-2	"	11.5	11.5	종로구공평동1	천호기업	
53	197	"	61.7	61.7	"	"	
54	197-1	도로	0.4	0.4	" 옥인동19	이 항 구	
55	197-2	대지	4.4	4.4	" 공평동1	천호기업	
56	197-3	도로	9.5	9.5	" 옥인동19	이 항 구	
57	198	대지	30.7	30.7	" 공평동1	천호기업	
58	198-1	"	3	3	" 인사동198	최 흥 업	
59	198-2	"	2.4	2.4	" 공평동1	천호기업	
60	199	"	49.6	49.6	"	"	
61	종로구인사동201	"	0.9	0.9	"	"	
62	201-2	"	81.4	81.4	"	"	
63	202	"	43	43	"	"	
64	203	"	17.7	17.7	"	"	
65	203-1	"	55	55	"	"	
66	204	"	56.2	56.2	"	"	
67	205	"	10.2	10.2	"	"	
68	205-1	"	21.2	21.2	"	"	
69	205-2	"	18.2	18.2	"	"	
70	206	"	1.7	1.7	"	"	
71	206-1	"	47.9	47.9	"	"	
72	210-2	"	18.9	18.9	"	"	

순번	지번	지목	지적 (㎡)	시행면적 (㎡)	소유자 주소성명		소유권 이의의 관대명세
					관계인 주소성명		
73	종로구인사동 210-3	도로	15.1	15.1		서울특별시	
74	210-4	대지	22.1	22.1	종로구공명동1	천호기업	
75	종로구견지동 120-4	"	5.6	5.6	"	"	
76	120-9	"	77	77	"	"	
77	종로구월훈동 198-55		417.6	117.2	중구대명로 1가 64-8 종로구익선동 166-77	대한삼리교 윤 순 회	유지재단
합 계			5,796.7	5,498.1			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426호

K·S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5.7.26

서울특별시장

1. 업체명 : ㈜신명전기
2. 대표자 : 김희복
3.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명동 5가 46
4. 규격번호 : K.S.C 4202
5. 규격명 : 저압 3상 유도 전동기
6. 종류등급 : 밀폐형 보통농형 4극
7. 처분사유 : K·S 규격미달
8. 처분기간 : 공고일로부터 3개월 (별도 해제시까지)